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법 무 부 장 관 정 성 호

◉법률 제2123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 중 “10년”을 “2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48조제1항 중 “10년”을 “2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